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중 토지등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제2호다목1)의 재배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7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이하 “지천“이라 한다)와”를 “한다)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를 “1킬로미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역이나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역”으로 한다.

제8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량연속자동측정기기”를 각각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 영 제13조제2항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명을 말한다.

제10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별지 8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한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u>제2호다</u> 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u>아니할</u> 것 ② (생 략)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 ----- -----. 1. ----- ----- ----- <u>제2호다</u> <u>목1)의 재배방법</u> ----- --- 2. ----- <u>않을</u>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u>한다</u>) 및 <u>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u> (이하 “지천“이라 <u>한다</u>)와 인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u>한다</u>)과 - ----- -----

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

가. 영 별표 4 구분란의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영 별표 4 구분란의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가목에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

-----.

가. -----

---- 1킬로미터 -----

나. -----

---- 지역

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나
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
터 이내의 지역

4. (생 략)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
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
속자동측정기기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유량
연속자동측정기기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
치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
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
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별
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

----- 지역

4. (현행과 같음)

제8조의13(오염부하량의 측정기
기) ① -----
----- 설치
해야 -----

-----.

1. -----
----- 적산유
량계(합산유량계)

2. ----- 적산
유량계(합산유량계)

② -----

보존해야 -----.

③ (생 략) <u><신 설></u>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u>⑤ 위원회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할 때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 ⑥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제9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 영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명을 말한다.</u>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⑥ (현행과 같음)
---	---